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청 구 인 000 등 6명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9호(고잔동, 안산법조타운)

담당변호사 강신하

전화 031-506-3322 이메일 sangrock3322@hanmail.net

2. 법무법인 자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담당변호사 최재홍, 이영기

3. 법무법인 율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8, 5층(서초동, 형남빌딩)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청구인 대법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5. 11. 6. 선고한 2025다214856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 2025. 11. 6. 선고한 2025다214856판결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23. 2. 12. 어린 나이에 탈출이 불가능한 선감도에 있는 외딴 섬에 강제수용되어 기한도 없이 엄격한 군대식 규율하에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노역 등을 당한 피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가합46225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입증자료 1-1).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2024. 9. 26.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감학원 사건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통상 수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용기간은 가장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강제수용기간이 6년 등 장기간인 경우에도 위자료액을 수용기간 1년간 8,000만원 기준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를 당한 청구인들에 대해 강제수용기간 1년 기준 5,000만 원을 정하고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인 청구인 이주동, 이주성, 주용욱에 대해서는 수용기간 1년간 4,000만 원을 인정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차별취급을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입증자료 1-1).

순번	사건	관할법원	1년간 위자료	종료여부
1	2025나 206481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2	2025나 205490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3	2025나 208870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4	2024나 2052497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5	2024나 2043981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6	2025다 214832	대법원	80,000,000	확정
7	2025나 206366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8	2025다 214651	대법원	80,000,000	확정
9	2025나 208588	서울고등법원	80,000,000	확정
10	2024가단 5226873	서울중앙지방법원	80,000,000	확정
11	2025가단 75339	서울중앙지방법원	80,000,000	확정

청구인들이 위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 역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인들의 부모의 위자료액만 일부 근소한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입증자료 1-2).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에 대해 2025. 11. 6. 청구인들의 차별취급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입증자료 1-3).

2. 이 사건 판결의 내용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및 경기도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랑아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의 청구인들을 탈출이 불가능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여 엄격한 군대식 규율하에 하루종일 폭행 등 각종 기합 등 가혹행위, 강제노역을 강요한 행

위에 대해 강제수용기간 1년 기준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사건인 다른 선감학원 사건이나 유사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강제수용기간 1년 기준 8,000만 원을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5년 이상 장기간 강제수용된 경우는 수용기간 1년간 4,000만 원, 3년 이하인 경우 강제수용기간 1년간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3. 심판제기요건의 충족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6. 3. 12.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 즉 2026. 4. 11.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다214856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합니다)은 확정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청구기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입니다(입증자료 1-3, 1-4).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에 기산점이 도래한 경우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을 기산점으로 본 결정(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에서도 권리행사가 법률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되는 않는다는 원칙을 명백히하고 있습니다.

4.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의 침해

가. 관련법리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때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바5 결정)

불법행위로 입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액수를 법관이 마음대로 산정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취급

청구인들은 선감학원의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장소인 선감학원에서 동일한 가해자들인 대한민국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엄격한 군대식 규율하에 폭행과

기합 등 가혹행위, 강제노동 등 동일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 산정 기준이 8,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강제수용기간이 청구인 이주성, 이주동, 주용옥의 5년보다 장기간인 6년 동안 강제수용된 경우에도 아래 기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강제수용기간 1년간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입증자료 5-1 내지 7).

더구나 청구인 이주성은 선감학원이 국가가 감독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어린이 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강제수용기간 성폭행과 팔을 묶은 채 감금을 당해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그 때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입증자료 2), 청구인 신정열, 이명우, 최경일 등은 초등학교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는 등 다른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비해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기간 1년간 위자료를 5,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입증자료 1-1 내지 1-2).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 1-2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수용기간 1년간 5,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위헌·위법한 부랑안 단속에 따라 원고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하는 피고들(대한민국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의해 장기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었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에서 강제수용기간 1년 기준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위자료액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수용기간이 5년 8개월 가량인 원고 강영식에 대해 480,000,000원, 수용기간이 6년 4월인 원고 강영주는 550,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수용기간이 청구인들에 비하여 장기간이 경우에도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용기간이 장기간 경우 오히려 위법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입증자료 6-1).

서울고등법원 제8-2 재판부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계속 수용성의 필요성에 따라 심사하는 등 별다른 절차를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6개월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장기간(원고 이상혁 4년 1개월 4일, 원고 방동석 3년 5개월 12일, 원고 김창선 6년 6개월 6일) 수용하였는바, 이는 부랑아보호시설에서의 아동의 보호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한 구 아동복지시설설치기준령(1962. 10. 15. 보건사회부령 제9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아동인 원고들을 필요 이상 장기간 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강기간 수용된 사실은 단기간 수용에 비해 위법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입증자료 4-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강제수용된 사실은 위법성의 정도가 오히려 수용기간이 단기간에 비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 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감학원 사건은 청구인들보다 장기간 수용된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까지 졸업한 피해자들도 수용기간 1년간 8,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입증자료 4-1 내지 6-2).

더구나 위 상고심 절차에서 상대방인 대한민국은 2025. 8. 5.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¹⁾되었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 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를 결정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도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입증자료 3).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실시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판결을 선고하여 성폭행까지 당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청구인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입니다.

(2) 명백한 평등권 침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동일한 시설인 선감학원에서 가해자도 동일한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은 강제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 산정 기준이 8,000만 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판결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대해 5년 이상 수용된 경우는 수용기간 1년간 4,000만 원, 3년 이하의 경우 수용기간 1년간 5,000만 원을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입증자료 1-1 내지 1-4).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의 명백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마120 결정 참조).

피청구인은 유사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 수용기간 1년간 8,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역시 부랑자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되어 폭행과 강제노역 등을 당한 경우지만 선감학원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인 점, 수용장소가 고립된 섬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점, 형제복지원 사건은 주범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선감학원의 경우는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점(입증자료 4-1, 18쪽), 형제복지원은 사설기관이나, 선감학원은 경기도 직접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함에

1) 전부 강제수용기간 1년간 8,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 위자료 액수를 인정한 것은 현저한 자의적 차별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입니다(입증자료 7).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가해자들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위자료 금액이 2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당하고 있습니다(입증자료 8).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헌법 제11조를 위반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취소되어 청구인들이 당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입증서류
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입 증 서 류

- 1-1. 제1심 판결문(청구인들)

- 1-2. 제2심 판결문(청구인들)
- 1-3. 대법원 판결문(청구인들)
- 1-4. 확정증명원
2. 녹취서(청구인 이주성)
3. 보도자료(선감학원 상소취하 및 포기결정)
- 4-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2038576판결)
- 4-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5-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3가합104718판결)
- 5-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6-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5. 6. 4. 선고 2024나2036594판결)
- 6-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7.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19285판결)
8. 신문기사

2026. 3.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2.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이영기

3. 법무법인 올림

헌법재판소 귀중